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 의 장
람	

제1257호 2017. 4. 10(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9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11호 인천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12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3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4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26호 공인 등록 공고 ----- 5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49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4.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대상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고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활성화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위원장 선출방법 등을 변경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위원장 선출 방법 등 변경(제2조)
 - 위원장 선출방법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
 - 위원을 임면 또는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 명시
 - 그 밖에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0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
-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제5조, 제7조)
-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 신설(제6조)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제1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전화번호 : 032-560-4153 (FAX 560-2720)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대상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고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활성화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위원장 선출방법 등을 변경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위원장 선출 방법 등 변경(제2조)
 - 위원장 선출방법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
 - 위원을 임면 또는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 명시
 - 그 밖에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0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
-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제5조, 제7조)
-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 신설(제6조)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제1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와 제16조”를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을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위촉한”을 “임명하거나 위촉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3항”을 “영 제10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을 “위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삭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의 회의”를 각각 “위원회”로, 같은 항 중 “개의회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사·용역·물품등”을 “공사·용역·물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심의내용”을 “심의 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심의 하계”를 “심의하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에 부의하여야”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을 “따라 회의를 부치는 경우에는 회의를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심의”를 “따라 심의”로 한다.

제11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영 제106조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14조의 제목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상 2억원 미만”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를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아니한다”를 “아니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 -----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과 ----- -----.</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임명하거나 위촉한 ----- ----- 영 제106조제3항----- ----- ----- -----.</p>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삭 제>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삭 제>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삭 제>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삭 제>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삭 제>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
----- 사

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생략)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

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

② ----- 위촉 ----- . ----- .

제4조(간사) ① ----- 1명-----.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 ② 삭제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심의대상) ①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에 관한 계약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

-----.

② 위원회-----

----- 회의를 시작하고-----
-----.

③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다.

<삭 제>

제8조(소위원회) ① -----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
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
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
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하
고, 필요한 경우 위원 외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
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생략)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
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공사·용역·물품 등 -----

-----.

② -----

----- 심의 내용 -----

-----.

③ -----

----- 사람을 -----

----- 심의
하게 -----.

④ -----
----- 회의에 부
치는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관계 공무원 -----

있다.

⑦ (생략)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
보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
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부
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
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
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
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심의
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
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
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
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
보 등) ① -----

-----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

② ----- 따라 회의
를 부치는 경우에는 회의를 부
치는 -----
-----.

-.

③ ----- 따라 심의-

-----.

제11조(의견청취 등) -----

----- 관계 공
무원-----
-----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 따라 -----

-----.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은 영 제106조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1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생략)
-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공사에도 주민을 참여시켜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제1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①

----- 인
상-----

-----.

1. 영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2. (현행 제10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제14조의 공사와 관련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감독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

----- 관계 공무원 -----

-- 아니 한다.

② -----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8.6.,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7호, 2017.1.26., 타법개정]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전문개정 2010.7.26.]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2016.11.2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

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전문개정 2010.7.26.]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5.]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8.19.>

⑥ 삭제 <2016.1.15.>

[전문개정 2010.7.26.]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4.>

[전문개정 2010.7.26.]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4.10~2017.5.1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4.10~2017.5.1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511호

인천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명 : 연구시설, 사업명 : 환경산업 연구단지 조성사업】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사업명칭변경, 건축계획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확장예정부지 내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있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 명칭 : (당초)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
(변경) 환경산업 연구단지 조성사업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있음)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비 고
당초	180,000㎡	20,809.65㎡	44,257.99㎡	지하1층/지상4층
변경	180,000㎡	20,822.94㎡	44,237.42㎡	지하1층/지상4층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있음)

- 성명 : (당초)환경부장관 윤성규
(변경)환경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5. 01. 26. ~ 2017. 05.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있음)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경서동	공유수면 (종합환경연구단지 확장예정부지내)	180,000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권자	공유 수면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변경	경서동	공유수면 (종합환경연구단지 확장예정부지내)	180,000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권자	매립 면허 권리 분할 협약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9.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512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4.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문화예술정책의 기획과 실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공익재단으로 설립하는 서구문화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및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의 재산(안 제5조)
- 정관(안 제6조)
- 이사회 및 임직원의 구성운영(안 제7조 ~ 제10조)
- 운영재원(안 제11조)
- 수익사업(안 제12조)
-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의 예산·결산(안 제13조 ~ 제15조)
-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안 제17조)
- 감독·보고·감사(안 제18조)
- 공무원의 파견(안 제19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560-4345, 팩스 560 - 274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문화예술정책의 기획과 실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공익재단으로 설립하는 서구문화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및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의 재산(안 제5조)
- 정관(안 제6조)
- 이사회 및 임직원의 구성운영(안 제7조 ~ 제10조)
- 운영재원(안 제11조)
- 수익사업(안 제12조)
-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의 예산·결산(안 제13조 ~ 제15조)
-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안 제17조)
- 감독·보고·감사(안 제18조)
- 공무원의 파견(안 제19조)

3.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관계 법령
 -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3)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4)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회관 운영·관리
2.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운영·관리
3.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
4. 생활문화진흥 관련 사업 시행
5.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구 문화대학 운영)
6.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구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이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구에서 부담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감독·보고·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 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6조제2호 중 “문화회관 및 문화·체육”을 “체육”으로 한다.

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서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

-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5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4.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구 문화회관의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변상조치 사항을 정비하고, 입장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주민들의 문화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변상조치 조항 삭제(제5조제2호)
- 입장권 발행에 관한 사항 정비(제9조제1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2,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서구 문화회관의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변상조치 사항을 정비하고, 입장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주민들의 문화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변상조치 조항 삭제(제5조제2호)
- 입장권 발행에 관한 사항 정비(제9조제1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한다)제4조”를 “한다) 제4조”로, “상”을 “상·하반기 정기대관 일정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관일정”을 “대관 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내용”을 “허가 내용”으로, “이전”을 “전”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건”을 “한 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연·영화 :”를 “공연·영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시: 30일

3. 행사: 3일

제4조제2항 중 “허가기간”을 “허가 기간”으로, “영화에 대하여”를 “영화”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청 별지 제6호서식”을 “신청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에 대하여”를 “신청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사안내”를 “행사 안내”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사전허가”를 “사전 허가”로, “필한”을 “마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입장금액, 일련번호”를 “전산티켓으로 입장금액, 일련번호 또는 좌석번호 등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종시설물”을 “각종 시설물”로, “사용자에게는”을 “사용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익일”을 “다음 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점검책임자”를 “점검 책임자”로 한다.

제11조 중 “대소구”를 “대소도구”로, “징수품목과 금액을 내부지침”을 “징수 품목과 금액을 내부 지침”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자체운영규정)”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체운영규정”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 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u>제4조에 따라</u> 사용허가를 받고 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이전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 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이 정하는 <u>상·하반기 정기대관</u> 일정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u>대관일</u> <u>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예</u> <u>외로 한다.</u> (개정 2001.12.13., 20 15.11.9))			----- ----- 한다) <u>제4조</u> ----- ----- ----- ----- <u>상·하반기 정기대관</u> <u>일정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u> <u>신청하여야 한다.</u> --- <u>대관 일</u> <u>정</u> ----- -- <u>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허가내용</u> 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사용예정일 10일 <u>이전까지</u>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 여야 한다.		③ <u>허가 내용</u> ----- ----- <u>전</u> ----- ----- -----.		
제3조(사용허가) ① 인천광역시 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과 같은 공연, 전시, 행사에 대 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①----- ----- ----- ----- ----- ----- -----.		

1. ~ 3. (생략)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구청장은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 ①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 1건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 공연·영화 : 15일
- 2. 전시 : 30일
- 3. 행사 : 3일

②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공연, 행사, 전시, 영화에 대하여는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 사용허가 신청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1. ~ 3. (현행과 같음)

4. -- 밖에 -----

②-----

--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 ①-----
----- 한 건

-----.

- 1. 공연·영화: ---
- 2. 전시: 30일
- 3. 행사: 3일

②----- 허가 기간-----

- 영화-----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 신청을 별지 제6호서식
-----.

②-----

료 감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사용료 감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회관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행사안내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 시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전허가와 반입 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반출 시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입장권은 입장금액,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신청은 -----

-----.

제6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 행사 안내 -----
-----.

<삭 제>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

----- 사전 허가 -----
----- 마친 -----

-----.

제9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 전산티켓으로 입장금액, 일련번호 또는 좌석번호 등을-----.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설점검) ①구청장은 회관의 각종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주 실시하여 사용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구민에게는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정기점검일은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고 월요일은 점검을 위해 휴관한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③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고 점검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11조의 별표 제2호 중 의상 및 대소구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징수품목과 금액을 내부지침으로 매년 지정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조례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 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점검) ①-----
-- 각종 시설물-----
----- 사용자에게

-----.

②-----

-----.
----- 다음 날-----.

③-----
----- 점검 책임
자-----
-.

제11조(사용료의 징수) -----
----- 대
소도구----- 징
수 품목과 금액을 내부 지침-----
-----.

제12조(자체 운영규정) -----

자체 운영규정-----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5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4.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제1항에 의거 서구생활체육회와 (구)서구체육회가 서구체육회로 통합되어 기존 서구생활체육회 및 관련 단체의 지원근거를 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서구체육회에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구생활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제3조(보조금 지원) 제3항에 관련 문구 개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134,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1항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제1항에 의거 서구생활체육회와 (구)서구체육회가 서구체육회로 통합되어 기존 서구생활체육회 및 관련단체의 지원근거를 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서구체육회에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구생활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제3조(보조금 지원) 제3항에 관련 문구 개정.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생활체육회(이하“생활체육회””를 “체육회(이하 “서구체육회””로,
“종목별연합회”를 “구종목단체”로, “생활체육회를”을 “서구체육회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응하지”를 “따르
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보조금 지원) ①·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회원단체인 <u>종목별연합회</u> 등을 비롯해 관계되는 단체의 경비를 <u>생활체육회를</u> 통해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보조금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체육회(이하 "서구체육회"</u>----- -----<u>구종목단체</u> ----- ----- <u>서구체육회를</u> ----- -----.</p>
<p>제4조(검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u>필요시</u>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u>응하지</u>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시정하였을 경우 향후 1년간 지원하지 아니한다.</p>	<p>제4조(검사) ① ----- ----- ----- ----- ----- <u>필요시</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따르지</u> ----- ----- -----.</p>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08.2.29., 2009.3.18., 2014.1.28., 2015.3.27.>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목개정 2015.3.27.]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526호

공인 등록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등록 사유

○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17년 4월 11일

3. 등록 공인 내역

“별첨 참조”

○ 등록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선거전용21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	2017년 4월 11일	

